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박혜성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전하게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의무화, 이용자에 대한 안전 고지 의무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자율규제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1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피해의 증가

COVID-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¹⁾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란 웹사이트 등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²⁾ 이러한 서비스 이용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국내외 관련 시장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939만 달러에 달한다.³⁾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만남의 기회가 증가하였

으나, 동시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에는 4만 1,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⁴⁾ 11월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편취한 가해자가 구속되는⁵⁾ 등 최근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의 주요 피해 유형과 규제 현황을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주요 피해 유형

(1)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현재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 가입 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이용자는 허구의 인적 사항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도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광고 및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1) 박주현, “코로나19로 소개팅 못한다고? 데이팅앱 이용은 ‘폭풍 증가’”, 한국일보, 2022. 7. 3.

2) 윤혜원,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 『LAW&TECHNOLOGY』 제18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2, p.4.

3) Grand View Research, “Online Dating Application Market Size, Share, & Trend Analysis by Revenue Generation Subscription, (Age (18 – 25 years, 26 – 34 years, 35 – 50 years, above 50 years), Gender, and Type) and by Region and Segment Forecasts, 2023 – 2030” (최종검색일: 2023. 11. 21.), <<https://www.grandviewresearch.com/industry-analysis/online-dating-application-market-report>>.

4) 대구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277 판결.

5) 김주영, “결혼중매 앱으로 만난 男7명에 30억 뜯어낸 40대女 수법”, 조선일보, 2023. 11. 9.



특히, 허위 계정을 활용한 허위 광고는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는 매력적인 외모와 조건을 갖춘 허위 계정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하여 6개 국내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바 있다.⁶⁾ 허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서비스 가입 및 결제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허위 계정을 통한 사기는 감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일종이다. 이는 허위 계정을 가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감정적 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이유로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피해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⁷⁾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만난 이용자로부터 원치 않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원치 않는 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등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⁸⁾

괴롭힘은 주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스토킹이나 신체적 상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강간이나 불법 감금과 같은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⁹⁾ 특히, 허위 계정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높이며 범인 검거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가 수집·저장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표 1] 참조).

[표 1] 국내외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건명	유출 정보
2021년 골드스푼 개인정보 유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앱 내 제출자료(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종교 정보 등)
2023년 419 Dating Chat & Flirt 및 다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유출	총 959,571개의 식별가능한 개인 이미지(성적 이미지 포함),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평문), 성명, 주소, 성별, 성별 감명 이력, 개인키 등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정보위, 데이팅앱 ‘골드스푼’ 운영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부과-」, 2022.; Jeremiah Fowler, “Dating App That Claims 50 Million Users Suffered a Data Breach”, vpnMentor, 2023. 7. 17.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교 등의 민감 정보와 재산 정보 등 별도의 세부 정보도 요구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제3자에게 공개·사용되며, 더 나아가 협박 등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다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다.

3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규제 현황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 재화 구매 등 운영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의 피해 유형은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하여 「형법」, 「전자

6)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2023. 8. 14.)

7)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미국 내 로맨스 스캠으로 약 5억 4,70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피해액의 약 6배가 넘으며, 2021년도 개인별 평균 피해 금액은 2,400달러에 달한다고 함(Emma Fletcher, 「Reports of romance scams hit record highs in 2021」(최종검색일: 2023.11.21.), <<https://www.ftc.gov/news-events/data-visualizations/data-spotlight/2022/02/reports-romance-scams-hit-record-highs-2021>>.)

8)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새로운 연애 트렌트 ‘소셜데이팅’ 피해 많아 -프로필 정보 확인 및 본인인증 의무화 필요-」, 2015.

9) 석인희, “‘데이팅 앱’ 성범죄 표적 된다”, 한국일보, 2019. 3. 8

금융거래법」,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규제된다.

[표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피해 유형에 따른 현행 관련 법률

피해 유형	적용 법률	조항
허위 계정	허위 광고	전자상거래법
	로맨스 스캠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제347조(사기)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괴롭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가해자 대상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의2(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한 각 피해 사례에 적용되는 법률은 범죄의 행태에 따라 적용 여부 및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음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는 주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외하면 해당 서

비스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허위 광고와 불법촬영물의 유통에 대한 사후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 외의 규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유·무형의 피해와 관련된 가해자의 처벌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행 관련 규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와 스토킹 및 강간 등을 포함한 각종 괴롭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과제

(1) 본인 확인 의무화

허위 계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한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허위 계정은 사업자의 허위 광고와 사기 범죄, 그리고 괴롭힘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허위 계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허위 계정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본인 확인은 특정인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것으로, 이름과 성별 등을 허위로 작성한 허위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22년에 미국 하원에서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온라인 데이트 안전법안(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¹⁰⁾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 가입 시의 신원 확인(Identity Verification)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명확

10) 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 H.R.8946.

한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¹¹⁾

(2) 이용자에 대한 안전 고지 의무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간에 데이트 등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는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 내밀한 개인정보의 공유 금지, 금전적 요청에 따른 송금 금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시 지켜야 하는 요건 등이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내의 조치나 신고 방법 등도 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 고지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온라인 데이트 안전법안」과 미국 텍사스주의 「인터넷 데이팅 안전법(Internet Dating Safety Act)」¹²⁾, 뉴저지주의 「인터넷 데이팅 안전법(Internet Dating Safety Act)」¹³⁾, 코네티컷주법 Title 21a Chapter 420¹⁴⁾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법률들은 안전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지 문구의 예시와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표 3] 참조). 이를 참고하여 국내에 적합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안전 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현재 2012. 8. 23. 2010헌마47, 252(병합)에 의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어 있던 인터넷 실명제는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익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음

12) Tex. Bus. & Com. Code Ann. § 106.

13) NJ Rev Stat § 56:8-168~172.

14) CT Gen Stat § 21a-435~439.

[표 3] 미국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법(안) 안전 고지 내용

지역명	고지 방법	예시로 제공하는 고지 내용
텍사스주	서비스 내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	-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 - 만남에 대한 신중한 결정 필요 - 개인정보 노출 주의 및 개인정보 요구 시 연락 중단 -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규칙
뉴저지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위와 동일
코네티컷주	- 서비스 내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 - 회원 가입 시, 전자 메일, 문자 메시지, 푸시 알림 등으로 제공	위와 동일
미 연방 (법안)	- 서비스 내 명확하고 눈에 띄게 제공 - 회원 가입 시 제공 및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제공	-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 - 만남에 대한 신중한 결정 필요 - 개인정보 공유 금지 - 오프라인 만남을 위한 규칙 - 상대방 요청에 따른 송금 금지 - 의심스러운 행동 등을 하는 상대방에 대한 차단 및 신고 권고 - 피해자의 사업자 및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고 요청 등

※ 자료: Tex. Bus. & Com. Code Ann. § 106.; NJ Rev Stat § 56:8-171.; CT Gen Stat § 21a-437~438.; The Online Dating Safety Act of 2022, H.R.8946 Sec. 2.

(3)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자율규제 도입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이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 신고 방법 마련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4에 따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